

제 605 호

1977.4.2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편집 : 문화공보관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 시보

## 차례

### ◎조례

- 제 1164 호 :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율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조례 ..... 3

### ◎규칙

- 제 1699 호 :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법 개정규칙 ..... 3

### ◎통령령

- 제 469 호 : 서울특별시 보고통제규정 ..... 11

### ◎고시

- 제 84 호 : 비로소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 ..... 34

- 제 116 호 :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의 출수사항 ..... 35

- 제 121 호 : 도시계획 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 35

- 제 12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 36

- 제 123 호 : 도시계획시설 (울릉장) 결정 및 지적승인 ..... 37

(이번 제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서	보도제작	공보제작	문화재감당관	문화공보관	월	공
기					일	람
기		한국	X	X		
기						

1600

제 124 호 : 도시계획 시설 ( 방수설비 ) 결정 및 지적승인	37
제 125 호 : 도시계획 시설 ( 학교 , 도로 , 운동장 ) 신설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38
제 126 호 : 도시계획 시설 ( 도로 )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39
제 127 호 : 도시계획 사업 ( 광화문재 개발구역 ) 시행자 지정일부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39
제 128 호 : 도시계획 시설 ( 도로 ) 신설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 지적변경승인 )	49
제 129 호 : 도시계획 시설 ( 도로 ) 신설 변경 폐지 결정 및 지적승인	50
제 130 호 : 도시계획 시설 ( 도로 ) 변경 ( 폐지 ) 및 지적변경승인	51
제 131 호 : 도시계획 시설 ( 공원 ) 결정 및 일부변경 지적승인	52
제 132 호 : 도시계획 시설 ( 운동장 ) 결정 및 지적승인	52
④ 공 고	
제 90 호 : 도시계획 시설 ( 도로 ) 실시계획 공람공고	53
제 93 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 생산지 정업체 대체 지정 및 지정취소 공고	55
⑤ 사 론	
	56

## 조 레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4월 27일

## ◎ 서울특별시조례제 1164호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목중 「재산세」를 「시세」로 한다.

제 1 조 중 「재산세」 다음에 「 및 도시  
계획세」를 삽입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세율) ① 전조의 토지 및 건물  
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 188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② 제 1 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 237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 분  
의 1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규 칙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중 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4월 27일

##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699호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제 117 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④ 전 1, 2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계과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입회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와 각종 시설공사(용역 제조포함)의 기성부분 검사시에는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p>	<p>2. 구 및 출장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은 그 구 및 출장소장(동은 그 관할 구청장, 출장소장)</p>
<p>제 118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재무국장(이하 "총괄자"라 한다)은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 한다.</p>	<p>3. 시 관할 구역내의 시유임야는 농지국장</p>
<p>제 118 조 제 2 항 "전항"을 "제 1 항" 제 4 항 "전항"을 "제 3 항"으로 한다.</p>	<p>4. 시 관할 구역외의 시유임야는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p>
<p>제 118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5. 보통재산은 재무국장</p>
<p>③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p>	<p>제 118 조 제 4 항 "전항"을 "제 3 항"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한다.</p> <p>제 118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118 조의 2(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1)총괄자는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p>
<p>1. 본청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 및 각사업소 재산은 그 주관국장</p>	

수 있다.

②총괄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관리자 또는 회계에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자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③총괄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관리자를 지정한다.

④총괄자는 관리자가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잠종재산으로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총괄자는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중권등을 취득하여 관리한다.

⑥관리자는 재산의 취득변경 및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총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국가로 부터 관리의 위임을 받은재산에 대하여도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9조, 제 120조, 제 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9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이하 "분임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제 1항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 1항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관리자가 당해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잘 읊날 수 있다.

제 120조 (공무원의 책임) 관리자 분임 관리자는 그 소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21조 (경제표) 시유지의 경제상 중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제표를

56-6 제 605 호 시

보 1977. 4. 27

매설하여야 한다.	2. 도면
제 123 조 「전조 단항의」를 「제 122 조 단서」로 한다.	3.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 12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5 조 제 1 항의 「시장」을 「총괄자」로 한다.
제 124 조(시유재산의 소관 및 용도변경 등) ①관리자가 그소관 시유재산의 관리환 및 용도의 변경이나 폐지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총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5 조 제 2 항의 「전항」을 「제 1 항」으로 하고 「금속」을 「긴급」으로 한다.
1. 재산의 표시	제 126 조를 삭제한다.
2. 목적 또는 사유	제 126 조의 2 제 126 조의 3 제 127 조
3. 도면	제 128 조 제 12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 126 조의 2 (기부체납) ①형 제 70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절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기부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를 폐지한 재산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지체 없이 이를 총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1. 대장의 둑본 또는 물건의 표시	3. 기부의 목적
	4. 기부조건
	5. 가격 및 현황
	6. 전축대지 증명
	7. 등기부 등본

<p><b>8. 기타 필요한 서류</b></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달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p> <p>제 126 조의 3 (기부체납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산정기준) ① 형제 7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체납된 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무상사용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 1 항의 무상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p> <p>대부대상재산가액 × 대부요율 = 년간대부로 기부체납재산가액 ÷ 년간대부로 = 무상 사용 기간</p> <p>다만 년간대부로 산정에 있어서 기부체납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 그 부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부대상재산가액으로 본다.</p> <p>제 127 조 (등기절차)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관리자는 자체없이 총괄자에게 등기 의뢰하여야 하며 총괄자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p> <p>다만 다음 각호에 의거 취득한 재</p>	<p>산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 후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계획 사업 실시로 인한 취득</li> <li>2.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취득</li> <li>3.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 부터 양수재산</li> </ol> <p>제 128 조 (재산취득) 재산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건의 표시</li> <li>2. 매수 목적</li> <li>3. 매수예상 가격</li> <li>4. 매도인의 주소, 성명</li> <li>5. 매매 승락서</li> <li>6. 도면</li> <li>7. 공부대장증명 (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건축대지증명, 등기부 등본)</li> </ol> <p>8. 기타 필요한 사항</p> <p>제 129 조 (신축등 보고) 시유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철판, 이족 또는 모양변경을 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 (참조 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p>
---	--

한다.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동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차액을 정산한뒤가 아니면 재산을 인도할 수 없다.
1. 물건의 표시	제 134조(재산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2. 목적 및 사유	(1)시유재산을 취득, 처분, 대부, 교환 및 기부처납을 하고자 할 경우 그 가격은 형제 6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설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3. 도면	(2)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액을 결정할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3)제 1, 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가격을 결정하되 재산의 노후,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재산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을 상회할수 없음이 명백할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근거서류 또는 복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	(4)제 1, 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할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고 평정근거가되는 매매실태조서와 감정회사 감정서를
제 131조, 제 132조, 제 133조, 제 134조 제 134조의 2, 제 1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1조(소유권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소유권은 대금을 완납한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제 132조(교환) 형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환취득후 그 재산을 판리할자가 다음사항을 갖추어 충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132조(교환) 형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환취득후 그 재산을 판리할자가 다음사항을 갖추어 충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상방물건의 표시	제 132조(교환) 형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환취득후 그 재산을 판리할자가 다음사항을 갖추어 충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교환상방 물건의 가액	제 132조(교환) 형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환취득후 그 재산을 판리할자가 다음사항을 갖추어 충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제 132조(교환) 형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환취득후 그 재산을 판리할자가 다음사항을 갖추어 충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교환 목적 및 사유	제 132조(교환) 형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환취득후 그 재산을 판리할자가 다음사항을 갖추어 충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교환 상방물건의 도면	제 132조(교환) 형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환취득후 그 재산을 판리할자가 다음사항을 갖추어 충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 승락서	제 132조(교환) 형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환취득후 그 재산을 판리할자가 다음사항을 갖추어 충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32조(교환) 형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환취득후 그 재산을 판리할자가 다음사항을 갖추어 충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133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제 133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p>첨부하여야 한다.</p> <p>(⑤)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가액의 유효기간은 6 개월로 하며 유효기간의 경과후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 개월이 경과하면 재산정</li> <li>2.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li> </ol> <p>다만 계속하여 대부하는 재산과 철거인정착지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의회의 결정으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 134 조의 2 (대부요율) ①(제 6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요율은 다음각호와 같이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작목적의 농경지는 재산가액의 년 5분이상</li> <li>2. 조림·목축·광업·채식등의 투자은 재산가액의 년 5분이상</li> <li>3. 도시계획에 저축되는 재산은 재산가액의 년 1 할이상</li> <li>4.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직원·후생 복지를 위한 시설의 사용료는 재산가액 년 5분이상</li> <li>5.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직접</li> </ol>	<p>사용할 재산은 재산가액의 년 5분이상</p> <p>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사용허가 및 대부시는 재산가액의 년 5분이상</p> <p>7. 기타재산은 년 1 할이상</p> <p>(②)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및 사분요율과 대부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방침에 의한 난연정착지</li> <li>2.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 토지</li> </ol> <p>제 135 조 (대부신청) 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유재산을 대쓰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건의 표시</li> <li>2. 부근대부실례조서 (또는 우상으로 하는 사유)</li> <li>3. 차수인의 주소·성명</li> <li>4. 차수목적</li> <li>5. 대부기간</li> <li>6. 도면</li> </ol>
---	---

56-10 제 605 호 시

보 1977. 4. 27

7. 공부상 필요한 증명(토지, 가 옥대장등본, 건축대지증명)	제 136조의 2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3항, 제 4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2)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 1항과 같다.
제 13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 136조의 2 제 2항을 다음과 같 하고 제 3항, 제 4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 135조의 2(대부조건) ① 시유재산 의 대부는 양제 63조의 규정에 따 른다.	② 제 1항 대금일 시납부기간은 2개 월내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약조치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낸부매각은 2할의 이 자를 불여야 한다.
②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내 재산은 양제 63조제 4항제 1호에 규정된 재산으로 본다.	④ 양제 69조제 3항제 1호 내지 제 3 호 및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 내의 재산매각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일택지(27평) 미만의 토지가 인 접한 전문부지와 합침하여 사용합 이 토지의 효용도를 증대시키는 경우는 그 토지를 양제 63조제 4항 제 1호에 규정된 건물있는 부지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1택지 (27평) 미만의 땅지도 또한 같다.	제 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6조(대부로 납기) 시유재산의 대부로는 대부계약체결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대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7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 괄자 및 관리자는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대장(제 74호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 138조 제 1항 «재무국장»을 «총괄자»로 한다.
	제 139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자는 소관 시유재산의 증감 현황을 매 회계년도 증감보고서와 매 5년마다 12월 31일 현재를 기 준으로 한 증감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3월 31일까지 총괄자를 거

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40조 (증감이동보고) 청·소에 있어서 시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자는 증감이동 보고서 (제 75호서식)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참조 재무국장)에게 당해월중 변동사항을 익월 10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1조중 「재무국장과」를 「총괄 자와」로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8289호 : 76.12.9) 시행 이전에 결정된 재산의 대부로 및 매각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훈령

서울특별시 보고통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197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 ◎ 서울특별시 훈령 제 469 호

서울특별시 보고  
통제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고통제규정 (대통령령 제 8358호) 및 동 시행규칙 (총리령 제 180호)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의 보고통제제도를 확립하여 보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통제작성 및 이용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모든 보고문서 및 통제문서는 보고통제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과 통제법 및 동 시행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

56-12 제 605 호

시

보 1977. 4.27

<p>여 처리한다.</p> <p>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1차 소속기관」은 서울특별시 (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과 구·출장소·사업소·경찰서는 「제2차 소속기관」은 등 파출소를 말한다.</p> <p>2. 「통제」라 함은 보고 및 통제를 작성할 때와 통제를 이용 발간하고자 할 때 자체보고통제판의 사전승인을 거쳐서 시행함을 말한다.</p> <p>제4조 (자료수집계획의 교환 및 보고요구의 일원화) ① 본청 및 제1차 소속기관의 각 실과장은 다음달에 수시보고에 의하여 수집할</p>	<p>월간 자료수집계획을 영세 7조 1항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매 월 15일까지 유관실과와 보고통제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p> <p>② 각 실과장은 다른 실과에서 송부된 월간자료 수집계획을 검토하여 당해과에서 보고받고자 하는 사항이 다른과의 월간자료 수집계획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보고받을 기관을 단일화 하여야 하며 보고받기로 결정된 실·과의장은 보고받은 자료의 사본을 자체없이 당해 자료를 보고받고자 한 다른 실·과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	--

③기관내부의 동일사업에 대한 보고는 당초 보고 승인된 사업주관과에서 일괄 보고받아 주무국과의 자료요구시 보고받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동일내용을 각각 주무과에서 충복 보고지시 할 수 없다.

제 5 조 ( 자체보고 봉제관) 본청의 보고봉제관은 봉제담당관이 되고 제 1 차 소속기관의 보고봉제관은 총무과장(경무과장) 또는 서무과장(제장)이 되며 제 2 차 소속기관의 보고봉제관은 사무장, 파출소장이 된다.

제 6 조 ( 분임자체보고봉제관 ) ①영 제 8 조 제 4 항 및 농시행규칙 제 6 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분임자체보고봉제관을 둔다.  
②분임자체보고 봉제관은 경무과감이 되며 그 직무는 제 9 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 7 조 ( 정기보고의 지정 ) ①영 제 10 조 제 2 항의 정기보고 지정신청여부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에 정기보고 지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본청보고봉제관이 되고 위원은 봉제담당관, 봉제기준계장, 시정개발담당관 개발1계장, 시민과 문서봉제계장, 행정과 행정지도계장, 경찰국 경무과 경무계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매년 2월 15 일내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④심의회는 매년 정기보고 지정신청 또는 폐지 신청된 사안을 심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또는 폐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심의회에서의 의안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 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8 조 ( 정기보고의 지정 ) ①보·고·봉·제규정 시행규칙 제 7 조 제 1 항 벌표 1에 명시된 정기보고 국록이 외의 보고로서 본청 각과 및 계 1 차 소속기관간 노는 제 1 차와

56-14 제 605 호 시

보

1977.4.27

<p><b>2차 소속기관간에 정기보고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아래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정신청하여야 한다.</b></p> <p>1. 동일사항에 대하여 연 3회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보고</p> <p>2. 매년 연보로 받아야 할 보고</p> <p>3. 법령 및 규정에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명시된 보고사항으로서 정기보고로 지정함이 타당한 보고</p> <p>4. 기타 정기보고로 지정함이 타당한 보고</p> <p>② 서울특별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기보고 지정 심의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지정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케 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기보고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보고통계규정 시행규칙 제 7 조 제 1 항 별표 1에 명시된 정기보고</p>	<p>목록이외에 본청과 제 1 차소속기관에서 받는 정기보고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훈령으로 지정한다.</p> <p>제 9 조 (보고통계관의 직무) ① 보고통계관은 기관장을 보조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직무를 관장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체보고통계 문서의 보고체계 확립</li> <li>2. 보고문서의 실사 통계와 소속기관의 보고통계 지도검열</li> <li>3. 수시보고 및 측수보고의 통계</li> <li>4. 행정 자료실의 지도감독</li> <li>5. 소속기관의 통계조사 활동의 통제</li> </ul> <p>제 10 조 (수시보고의 통제) ① 본청 또는 제 1 차 소속기관에서 등급 또는 하급기관으로부터 수시보고를 받고자 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영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수보항목별 설명서를 작성하고 통계관의 통제를 받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p>
--	--

<p>②수시보고 통계문서는 기암물과 시행문 우측상단에 통계인을 주인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③수보 항목별 설명서는 결재가 끝난직후 보고 통계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p> <p>④타기관에서 승인된 수시보고 문서를 농급 또는 하급기관에 이첩 보고 받고자 할 때에는 당초 승인된 문서를 첨부하여 수보 항목별 설명서를 작성보고 통계관의 확인을 받으므로 승인절차에 가름한다.</p> <p>⑤전항의 경우에는 영제 11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p> <p><b>제 11 조 ( 특수보고의 통계 )</b> 특수보고 통계 시의 수보 항목별 설명서 작성은 보고받을 내공이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는 사항에 한한다.</p> <p><b>제 12 조 ( 전화보고 )</b> ①영제 13 조에 의한 전화보고 사항은 수신 다음에 승인번호를 명기하여야 하며 회신 문서는 반드시 전화로 보고 하여야 한다.</p> <p>②보고통계관은 승인된 전화보고 목록을 대장에 기재하고 예년 회색 목록을 작성 유관 실과에 배부하여야 한다.</p> <p><b>제 13 조 ( 통계보고 )</b> ①통계법 및 동사령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통계보고는 다음각호에 따라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보고문서를 작성한 부서에서는 별지 1호 서식의 수보 카드에 보고 받은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한 후 보고서 사본 1매를 첨부하여 행정자료실에 이송하여야 한다.</li> <li>보고통계관이 통계보고를 통제할 시에는 보고서 원안과 시행문에 별지 제 2호 서식의 경유인을 날인 함으로서 통제에 대신한다.</li> </ol> <p>②전항의 승인된 통계보고 목록은 별표 2와 같다.</p>	<p>야 한다.</p> <p>②보고통계관은 승인된 전화보고 목록을 대장에 기재하고 예년 회색 목록을 작성 유관 실과에 배부하여야 한다.</p> <p><b>제 13 조 ( 통계보고 )</b> ①통계법 및 동사령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통계보고는 다음각호에 따라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보고문서를 작성한 부서에서는 별지 1호 서식의 수보 카드에 보고 받은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한 후 보고서 사본 1매를 첨부하여 행정자료실에 이송하여야 한다.</li> <li>보고통계관이 통계보고를 통제할 시에는 보고서 원안과 시행문에 별지 제 2호 서식의 경유인을 날인 함으로서 통제에 대신한다.</li> </ol> <p>②전항의 승인된 통계보고 목록은 별표 2와 같다.</p>
---	--

제 14 조 ( 행정자료설치운영 ) ①영제	점자로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15조 제 1 항에 의한 행정자료실은 본청과 제 1 차 소속기관에 각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본청의 행정자료실은 통계담당관실과 경무과에 설치하며 제 1 차 소속기관에서는 자체보고 통제관이 소속된 실과에 설치 운영한다. ③본청 및 제 1 차 소속기관에서는 보고받은 모든 자료를 별지 제 1 호 서식의 수보카드에 기재하여 당해 행정 자료실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수보카드는 국과별로 분류하여 카드함에 보관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이 규정 전조 제 1 항 1 호에 의한 통계보고와 수보카드도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⑥문서통제관 및 각 실과에서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행정자료와 내부에서 발간한 간행물 1부씩을 행	⑦보고통제관은 제 3 항과 제 6 항의 자료를 제출치 않는 부서에 대하여 영 제 19 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녹추할 수 있다. ⑧각급기관의 보고통제관은 매년 1회씩 수집된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각실과 및 본청 보고통제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 보고기일 ) ①영제 18 조 2 항에 의한 경기보고와 통계 승인보고와 기관별 보고기일은 별표 1과 같다. ②수시보고와 보고기일을 정합에 있어서는 최소한 다음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체 15 조 ( 보고기일 ) ①영제 18 조 2 항에 의한 경기보고와 통계 승인보고와 기관별 보고기일은 별표 1과 같다. ②수시보고와 보고기일을 정합에 있어서는 최소한 다음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내 상호간 5일 2. 본청과 제 1 차 소속기관간 7일 3. 1 차 소속기관과 2 차 소속기관간 5일
제 16 조 ( 녹추장의 발부 ) ①보고통제	규정 시행규칙 제 11 조 제 2 항에 의

제 605 호

시

보 1977.4.27 56-17

한 당해보고문서의 주무과에서의  
1 차 등록장 발부의뢰는 별지 3 호  
서식에 의한다.

②전 항의 등록의뢰를 받은 통계관  
은 보고문서 등록처리 대장에 관  
계 사항을 기록한 후 즉시 등록장  
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 (등록장의 처리) 등록장을  
접수한 보고통계관은 별지 제 4 호  
서식의 등록장 처리인을 수신기관  
보관용 부면에 찍어 등록처리 대  
장에 관계사항을 기록한 후 당해보  
고문서 처리주무과에 이송하고 처  
리 주무과에서는 주무과장의 결재  
를 득한 후 등록장 회신문에 보고  
예정기일을 명시 보고통계관의 확  
인을 받아 회신문을 철폐하여 발

송기관의 보고통계관에게 즉시 송  
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무기일 보고) 사업완료시기  
의 예측 불능으로 보고기일을 확  
정할수 없는 보고요구문서에 대하  
여는 등록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 19 조 (문서통제관의 임무) 문서  
통제관은 영제 9 조에 의한 보고문  
서와 통계보고문서의 수발은 반드시  
보고통계관을 거쳐 시행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 전  
의 보고통계관이 행한 보고통계업  
무는 이 규정에 의한 보고통계관  
이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 1 호서식)

수 보 카 - 드

작성기준일 : 1977. . . 현재

제 목 :

작성자:

(인)

구별 구분 또는사업명	
총 계	

※본 카-드는 수보와 동시 간략하게 작성하여 행정자료실에 즉시 이송  
하여야 한다.

56-18 제 605 호

시 도

1977.4.27

(별지 제 2 호)

일 반 통 계 제 지 정	5cm	1cm
------------------	-----	-----

(별지 제 3 호 서식)

○ ○ 과

분류기호

197 . . .

수 신 자 세 보 고 통 제 관

제 목 제 1 차 독 축 장 반 부 의 회

1) 독 축 문 서 제		2) 보 고 승 입 호	
3) 발신 번 호		4) 보 고 승 입 자	
5) 제출 기 일		6) 독 축 장에 명시 할 보고기일	
7) 독 축 기관			

위와 같이 독축 의회하오니 독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장 ④

(별지 제 4 호)

독 축 장 접 수 처 리 인		
197 . . . 접수 처리지 시 및 의견		0.7cm
공 람 권 자		0.5cm
주 무 실 과 장		1.2cm
보 고 통 계 관		1.2cm
		1.2cm
--- 2cm ---		

제 605 호

시

보 1977.4.27 56-19

(별표 3)

보고주기	기 관	별 세 출 기 일	
		본청에서 중앙보고	1차소속 기관에서 본청보고
즉 보	2일 이내	1일 이내	즉 시
일 보	3일 이내	2일 이내	1일 이내
주 보	주말로 부터 3일 이내	이주 화요일	외주 행요일
순 보	순기 말로 부터 4일 이내	익순초 3일이내	익순초 2일이내
반 월 보	반월 기말 5일 이내	반월기 말 3일이내	반월기 말 2일 이내
월 보	월 말로 부터 10일 이내	익월 5일이내	익월 3일이내
기 보	분기 말로 부터 15일 이내	익분 기초 10일 이내	익분 기초 5일이내
반 년 보	반연기 말로 부터 20일 이내	반년기 말로 부터 15일 이내	반년기 말로 부터 10일 이내
연 보	연말로 부터 1월 이내	연말로 부터 20일 이내	연말로 부터 15일 이내

56-20. 제 605 호.

시

보

1977.4.27

1. 지정통계 목록		승인 번호	작성 주기	최초작성 기 관	1 차경 유기 관	2 차경 유기 관
소관별	통 계 명 칭					
경 제	인구센서스	1	5 년			
기획원	주택센서스	2	5			
	인구동태조사	3	월 별			
	경제활동인구 조사	4	분기별			
	광고업센서스	6	5 년			
	가계조사	10	월 별			
	전국 소매·不吃가 조사	13	분 별			
	도 소매업 센서스	14	3 년			
	광고업 통계조사	17	년 별			
	국부 통계조사	21	10 년			
	광고업 동태조사	23	월 별			
	재고 통계 조사	26	월 별			
	건설업 통계조사	27	월 별			
	건설업수주 통계	29	월 별			
농수산부	농업센서스	5	10 년			
	농가 경제 조사	8	월 별			
	농산물 생산비 조사	9	연 별			
	식량작물 생산량 조사	15	연 별			

## 2. 일반통계목록

## 가. 정부기관

소 분류	통 계 명 칭	승 인 번호	작 성 주기	최초작성 기 관	1차 경우기 관	2차 경유 기관
경 제 기획원	주요행정통계조사	60	월 별			
	도소매업동태조사	121	월 별			
	통계활동현황조사	144	연 별			
	인구이동조사	341	연 별			
원 호처	신규등록사업체보고	474	월 별			
	퇴직급여 대상자 통계보고서	398	월 별			
	원호대상자별통계보고	399	월 별			
	상이 자상이처별통계	400	연 별			
	취업자통계보고	401	월 별			
	취학자 통계보고	402	연 별			
	기업체 실태조사	462	연 별			
내무부	지역환경생활동 인구조사	123	분기별	시 도		
	한국도시 연간자료 조사	342	연 별			
	고물상. 전당포. 흥선업실내 및 단속상황	431	분기별	경찰서		
	인장업실태 및 단속상황	432	분기별	경찰서		
	저방세 징수상황	433	월 별	동		
	불천자 세금 현황	434	월 별	경찰서		
	월중교통사고 발생현황	435	연 별	경찰서		
	화재발생 종별표	436	월 별	경찰서		
	세마을 소득조사	437	연 별	시 도		

56-22 제 605 호 시

보

1977.4.27

소분별	통 계 명 칭	승인 번호	작 성 주 기	최초작성 기 관	1차 경유기관	2차 경유기관
법무부	외국인 입국자통계보고	252	월 별			
	외국인 출국자통계보고	253	"			
	내국인 출귀국자별 말통계보고	254	"			
	출입 항공기 및 승무원통계보고	255	"			
	제외국인 출입국자통계	256	"			
	출입 항선박 및 선원통계보고(항구별)	257	"			
	출입 항선박 및 선원통계보고(국적별)	258	"			
	제소자통계	384	월별주별			
	재원생통계	385	"			
	소년학생법과사건표	386	월 별			
	입국자격부여 및 입국허가통계	475	"			
	선원 출국자통계	476	"			
	상록허가통계	477	"			
	거류신고자통계	478	"			
	인권침해사건통계	479	분기별			
	체류외국인국적별자격별통계	480	연 별			
문화부	교육기관통계조사	33	연 별			
	각급학교실태조사	55	"			
	초중등교원수급상황보고	226	"			
	청소년직업학교운영실태보고	227	반년별			
	학생기생충검사현황	228	반년별			
	학생 및 교원 신체검사통계보고	230	연 별			

소 편별	통 계 명 칭	수인 번호	작 성 주 기	최초작성 기 관	1 차 경유기관	2 차 경유기관
농수산부	농업기재보 유현황	288	연 별	동	구출장소	
	미강생산액정 및 착유실적보고	289	연 별	구		
	농지전용상황 보고	290	분기별	동	구출장소	
	경지이용실적보고	291	반년별	"		
	농약공급상황보고	292	연 별	구		
	퇴비생산보고	293	분기별	동	구출장소	
	농작물피해보고	294	연 별	"	"	
	녹비생산보고	295	연 별	"	"	
	잡곡두류실수확량조사	296	연 2회	"	"	
	백류과중별적조사	297	주 별	"	"	
	백류증증별면적조사	298	월 별	"	"	
	통발실태조사	299	연 별	구		
	상묘생산비조사보고	300	연 별	잡업 점자소		
	춘하추기장전생산 및 공판상황보고	302	반연별	동	구출장소	
	춘추기양잠규모조사보고	303	반 별	동	"	
	춘추기 소잠실적보고	304	반 별	동	"	
	원작충 및 보통작증생산실적	305	연 별	시 도		
	잔전생산비조사	306	연 별	잡업 점자소		
	생사재조판예비조사	307	연 별	도		
	제사통계별보	309	월 별	사업체		
	누에사육 보고	310	반년별	동	구출장소	
	과실수확고보고	311	반년별	동	"	
	원예작물가공현황조사보고	312	연 별	동	"	

56-24 제 605호 시

보

1977.4.29

소관별	통계명칭	승인	작성	최초작성	1차	2차
		번호	주기	기기	표준경유기판	경유기판
	김강재소예상실수확량조사보고	313	반년	별	동	구출장소
	체스예상실수확량실적	314	반년	별	동	"
	축성재배 시설현황 및 생산실적	315	연	별	동	"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 예상(실) 수확량조사	316	반년	별	동	"
	유채파종실적보고	318	연	별		
	인조생산 및 수매 실적보고	320	연	별	동	구출장소
	양송이 생산보고	321	반년	별	구	
	저마식부실적보고	322	연	별	구	
	축산물처리 가공실적보고	323	분기	별	시	도
	낙농목장실태파악	324	연	별	구	
	백합사로 생산실적보고	325	별	별	시	
	동물약품생산판매상황보고	328	별	별	구	
	도축검사보고	329	별	별	구	
	유제품생산소비상황 및 자격	330	월	별	구	
	목가보고	331	월	별	구	
	양곡재고현황	332	주	별	구	
	양감경영실태조사	340	반년	별	구	
	양송이통조림생산실적보고	416	연	별	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업무보고	497	반년	별	시	도
	병충해발생상황보고 (수도액류)	498	5	일별		
	병충해 발생실적보고 (수도액류)	499	순	별	동	구출장소
	농약재고조사	500	연	별	동	"

제 605 호 시

보

1977.4.27 56-25

소관별	통 계 명 칭	승 인	작 성	최초작성	1차	2차
		번호	주 기	기	관찰용지	제작용지
상공부	보통작충생산비조사	501	반년별	도감총장		
	양곡소비량조사	502	월 별			
	중소기업 실태조사	104	연 별			
	기계공업체실태보고서	148	월 별			
	중소기업 가동상황보고	272	분기별	구		
	광산불생산량조사	273	월 별	시 도		
	민수용단및연 단수급상황보고	275	월 별	"		
	광산재해통계	449	월 별	구.시		
	조선사업종합보고	450	반년별	시.도		
	가동새마을공장의 운영실적보고	451	월 별	구.시		
공업단지	중소제조업수출실적보고	452	월 별	"		
	영허가상황보고	453	분기별	시.도		
	지방공업단지 업주기업	494	월 별			
	관리 철					
	체현황보고					
	건설부					
	하수도통계	281	연 별	구.시		
	상수도통계	282	연 별			
	전국주택현황보고	283	연 별			
	건설통계	284	연 별			
건축허가통계	전국주택건설현황보고	285	연 별			
	건설통계(교통량자료조사)	286	연 별	구.시		
	도로 및 교량현황	336	월 별	"		
		378	연 별	"		

56-26 제 605 호 시

보

1977.4.29

소관별	통계명칭	승인번호	작성주기	최초작성기판	1차경유기판	2차유기판
보건사회부	수문조사연보	397	연별		/	
	주거실태조사(유주택)	418	연별			
	중기등록현황	438	월별	시.도		
	중기조종사면허현황	439	분기별	"		
	중기소재지변동신고현황	440	분기별	"		
	무허가건축물현황	473	분기별	구.시		
	국립공원관리현황	481		구.시 국립공원		
	주택 및 택지현황	495	연별	구.시		
	생활실태조사	105	연별			
	국민신체편차조사	124	연별			
	질병상해통계조사	125	연별			
	국민영양조사	147	연별			
	모자보건실태조사	169	연별			
	가정의례실태조사	172	연별			
	대한의식구조조사					
	미화아가정환경실태조사	173	연별			
	법정전염병환자별보	205	월별	구.시		
	내약약물생산및처출상황표	206	월별			
	나환자등록상황표	207	월별			
	가족계획사업실적	208	월별	구.시		
보건사회부	이. 미용사연증면허상황	212	연별	"		
	병원 및 혈액원상황보고	214	분기별	시.도		
	개업계출및허가등록된의료기관별분포상황	215	연별	구.시		

제 605 호 시 보 1977. 4. 27. 56-27

소관별	통계명칭	승인 번호	작성일자 주기	최초작성 주기	1차 경유기간	2차 경유기간
	간호요원 현황	216	분기별	구. 시		
	의약품영업자연 할현재 분포상황	217	연별	구. 시		
	의약품등생 산설적보고	218	월별	"		
	미당인 실태보고	222	"	동	구출장소	
	부녀아동보호시설현황	468	분기별	구. 시		
	식품환경 관계실태현황	469	"	구. 시		
	생활보호 실적	470	"	동	구출장소	
	사회복지 시설수용자동태	471	"	구. 시		
	기미아 및 부랑아 취급실적	472	"	"		
	결핵관리사업실적	482	월별	"		
	만성병 사업 실적	483	분기별	"		
	모자보건사업 실적	484	"	"		
	요구호대 상자구호 실적	485	"	"		
	보건의료장비기재보고	486	"	"		
	가정의례준칙 상황보고	487	"	"		
	생활보호대상 자명부작성	505	연. 일			
교통부	자동차운수실적보고	231	월별	시. 도		
	주요물자수송 실적보고	232	"	"		
	자동차면허등록상황	233	"	"		
	판광객이동상황 보고	235	"	구. 시		
	월간 민간항공사업	244	"			
	통계					
	월간 민간항공 운항	245	월별			
	통계					

56-28 제 605 호 시

四

1977.4.27

소관별	동    계    명    칭	승인 번호	작    성 주    기	최초작성 기    관	1차 경유기관	2차 경유기관
	해난사고현황	387	월    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외국인 관광객 이용	388	반년별	시.도		
	인원 및 의화회득보고					
	호텔이용객동태보고	389	월    별	시.도		
	고속버스수송실적보고	390	"			
	항공부문의화수입실적	391	"			
	창고업 허가상황보고	427	"	기.도		
	노후차량체실험보고	428	"	"		
	자동차점류장허가상황보고	429	"	"		
	차량별보유현황	430	연    별			
	국제우편물나라별이용률	203	월    별			
	수및 우편낭취금통계					
	우편물통계	204	월    별			
	우체국구내지황조사	454	연    별			
	전화업무실적보고	455	월    별			
	시내가입전화수요조사보고	456	연2회			
	시내통화량조사보고	457	"			
	공중전화수요조사보고	458	연    별			
	전실험무실적보고	459	월    별			
	무선업무실적보고	460	분기별			
	공중전화관리상황보고	461	월    별			

제 605 호

시

보 1977.4.27 56-29

소분별	통 계 명 칭	승인 번호	작 성 주 기	최초작성 기	1 차 판정유기판	2 차 경유기판
문화 정보부	출판사 인쇄등록 및 등록변경 상황보고	441	월 별	구, 시		
	스크린취타제 이병 보고	442	분기별	동	구, 출장소	
	유선 방송허가 폐업변경 상황보고	443	연 별	구, 시		
	지정및 사찰문화제 관람료 징수 상황보고	444	"	"		
조달청	불품증감및 현재액 누계산	463	"			
	정기재물조사 보고	464	"	구, 시 사업소		
산림청	산림기본조사	179	연 순	동	구, 출장소	
	표고 계대 사업 생산 실적보고	180	월 별	"	"	
	포루라 기계제품의 수출및 생산 실적보고	181	분기별	"	"	
	제재공장 및 생산실적보고	182	연 별	"	"	
	수묘생산실적보고	183	"	"	"	
	임산연료수급실보고	184	분기별	"	"	
	임목벌체허가 및 목재공급 상황 보고	185	월 별	"	"	
	임산액조사	339	연 별	"	"	
	관상수 사업 상황조사	380	"	"	"	
	산림피해 및 부정임·산불 단속 상황보고	488	월별 및 수별	"	"	
	양묘사업 실태보고	489	연 2회	양 묘 사업소		

56-30 제 605 호

시

보

1977.4.27

소관별	통 계 명 칭	승인 번호	작 성 주 기	최초작성 기 관	1 차 경유기관	2 차 경유기관
산림청	사방사업보고서	490	연2회	사방사업소		
	국유림 인공조림지 활착상황보고	491	연 별			
	민유림 조림 활착상황보고	493	"	구, 시		
	민유림 조림 실적보고	492	연2회	구, 시		
전매청	일담배 생산예정량 및 수납대금 조사	187	월 별			
	물가임금조사	188	분기별			
	일담배 작황조사	190	월 별			
	담배 생산실적	191	"			
	일담배 생산비조사	189	연 별			
	인삼경작일람표	192	월 별			
	인삼수납	193	일 별			
	홍삼제조	194	월 별			
	홍삼제품제조	195	"			
	홍삼 및 홍삼제품원화판매 실적보고	403	"			
	담배출납상황보고	404	"			
	년도연초경작허가실적보고	405	연 별			
	일담배 재건조작업 실적보고	406	월 별			
	일담배 수납실적보고	407	간년월			
	소매인 변동상황 및 애도액현황	408	월 별			
	담배소비실태조사보고	417	격년별			

제 605 호 시 보 1977.4.27 56-31

소관별	통 계 명 칭	승인 번호	작 성 주 기	최초작성 기 관	1 차 경유기관	2 차 경유기관
전·매월	지역별 담배판매 상황	465	연 별			
	연초식부경시 실적 보고	466	"			
국세청	상품셋가조사표	280	월 별			
	세입정 수총 보고서	467	"			
관세청	선박입출항통계표	276	월 별			
	수출입화물 반출입 및 체회량 보고서	276	"			
	무역통계	352	"			
농촌 진·홍청	농산물가격 추세 흥보실 시상황보고	196	반년별			
	농가경제 부기장 상황보고	197	"			
수산청	어업경영 조사	130	분기별			
	선어유봉조사	131	월 별			
	수산물 가격조사	132	일 별			
	수산제조업 생산고조사	141	월 별			
	어가경제조사	156	분기별			
	규제대 상어업 어획량보고	198	월 별	시, 도		
	수산자재 생산실적보고	199	분기별	"		
	해태 생산 및 작황조사보고	200	월 별			
	해태 진·홍실적보고	201	연 1회			
	월별종묘별 뱃장어 계포실적보고	202	월 별	구, 시		
	수산물위탁 판매고조사	345	"			

56-32 제 605 호

시

보 1977.4.27

소관별	동 계 명 칭	승인 번호	작성 주기	최초작성 기	1 차 관경유기판	2 차 경유기판
특허청	공업소유권통계	383	월 별			
노동청	노동생 산성조사	139	연 별			
	노동력 유동 실태조사	140	반년별			
	휴폐업 사업체 실태	142	연 별			
	임금실태조사	158	"			
	구인, 구직 취업 현황 조사보고	267	분기별			
	근로자 공급 상황	270	"			
	구인, 구직 취업 현황	271	월 별			
	고용전망조사	348	반년별			
철도청	화물 일 보	266	일 별			
	철도보선통계	268	연 별			
	동력차별 운전 실적	395	월 별			
	운수성적일(월) 보	424	일별, 월별			
	여객 사고통계	425	월 별			
	화물사고통계	426	"			
항만청	정기여객선 운항실적보고	236	월 별			
	명령항로 운항실적보고	237	"			
	화물수송 신적보고	238	"			
	선박실적보고	239	분기별			
	항만수입 실적보고	240	월 별			
	외화수입 보고	242	"			
	등록선박통계 보고	243	"			

제 605 호 시

보 1977.4.27 56-33

소관별	총 계 명 칭	승 인 주 기	작 성 주 기	최초작성 기	1 차 판정유기판	2 차 판정유기판
항만청	선원 수첩 취급보고	392	월 별			
	해기 사면허 발급통계	393	"			
	해외취업선원 현황보고	445	"			
	국제여객 (웨리호) 수송실적	446	주 별			
	콘테이너 수송실적	447	월 별			
	주요항만시설 및 능력현황	448	연 별			
대검찰청	법적분석증명	379	분기별			
서울시	서울시 인구동태표본조사	44	연 별	시		
	경제활동인구조사	136	분기별	"		
	주야간인구조사	146	연 별	"		
	인구 이동조사	419	"	"		
부산시	부산시 가계조사	149	분기별			
	승객교통량조사	154	연 별			
	차량교통량조사	420	"			
강원도	강원도 도시가계조사	337	분기별			
충청북도	충북 도시가계조사	129	"			
경상북도	가계조사	120	분기별			
	세마을소득조사	496	연 별			
인천시	경제활동인구조사	150	분기별			
목포시		151	"			

56-34 제 605 호 시

보 1977.4.27

## 고 시

## ◎ 서울특별시고시제 84 호

비로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

비로단속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거 비로 제조 영업허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1977.3.28

서울특별시장

허가 번호	허가 또는 변경년월일	생산업자의 주소 성명 및 제조공장소재지	비로의명칭	보증성분량	비 고
1 - 1	77.3.28	(구) 1. 주소, 성명 서울종로 삼청동 25- 132 아 휴 2. 제조장소재지및 명칭 서울도봉구 방학동 7 서울미원주식회사 (신) 1. 주소, 성명 서울영등포구 신길동 205 김 병 기 2. 제조공장소재지및 명칭: 서울 도봉구 방 학동 7 서울미원주식회사	아미노산발효질소전량: 4% 부산비로(박)	염분농도 가리전량: 2.5% 비로(박)	10%이하

조건 1. 유효기간: 1977.3.28 - 1979.3.28

2. 본 허가는 허가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타인에게 허가권을 양도 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6 호

도로 교통법에 의한 운전  
자의 준수사항 고시

도로 교통법 제 44 조 제 7 호에  
의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7.4.20

서울특별시장

1.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동차의 운  
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제 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여서  
는 아니된다.

나. 택시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합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택시,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는  
규정된 요금(메타기에 위한 대  
금) 이외의 요금을 요구하거나

정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의  
운전자는 허가 없이 자동차 운  
수 사업법 제 57 조 제 58 조의  
유상 운송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 고시 제 177 호(62.12.  
8)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  
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3.4  
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  
시함.

56-36

제 605 호

시

보 1977.4.27

2. 보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 을 힘.	4.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7. 보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보지 수용법 제4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보지조소생략
3.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보지 및 건물의 소유자 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1977.4.25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 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호(1977.3.16)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1. 사업시행의 위치 : 종로구 신문로 2가 6의 4 - 흥파동 36의 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고려병원 - 독 립문간, 도로 확장 공사 3. 사업의 규모 : 폭 = 12m 연장 = 58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1977.2.1 ~ 1977.6.30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보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4.25 서울특별시장

## 자. 도로 결정 및 자치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시점	총점	비고
신설	소로	3		6m	195 <sup>m</sup>	웅답동 37	웅답동 28-1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제 605호

시 보

1977. 4. 27 56-37

<b>○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5 호</b>		여 이를 고시 한다.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 및 지적승인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와 성북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등법 제13조와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하		1977. 4. 27 서울특별시장

## 가. 시설결정(운동장)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운동장	성북구 종암동 산2의 27 의 4필지	111.600.5坪 (33,759평)	체력단련장

\* 별첨 도면 생략

<b>○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4 호</b>		과 같이 고시한다.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 및 지적승인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1977. 3. 16)의 권한 위임에 의거 신설		1977. 4. 27 서울특별시장

## ○ 방수설비 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규모	연장	지점	종점	비고
신설	방수설비	B = 10m	L = 250m	신도읍 덕온리 길 1-138	신도읍 덕온리 길 434-2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은(도면 생략)

56-38

제 605 호

시

보 1977.4.27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5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운동장)  
신설,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운동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 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  
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  
와 건설부 고시 제41호(19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책비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4.27

서울특별시장

##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평)	비고
신설	학 교 (업광여자상업고등학교)	도봉구 월계동 824의 4 의 17필	29,190 (8,830평)	
"	한 교 (중, 고등학교)	강남구 가락동 112의 2 의 23필	39,884 (2,065평)	
"	한 교 (홍익중, 고등학교)	성북구 성북동 151 의 13필	35,551 (10,754평)	기존 학교

## 나. 도로변경(폐지)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m	17.5m	월계동산 59	월계동산 46	업광여자상업 고등학교용지내 도로폐지
변경	"	"	"	"	"	"	"	

## 다. 운동장변경(폐지)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평)	비고
기점	운동장	도봉구 월계동 824의 4 의 11필	18,500 (5,596평)	
변경	"	"	18,500 (5,596평)	폐지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제 605 호 시 보 1977.4.27 56-39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및 지적승인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호 ('77.3.16)의 권한 위임				2. 본고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4.27			
				서울특별시장			
○ 도로 변경 및 지적 승인 조서							
구분	통길	유별번호	폭면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1	8m	110m	서소문동 120-25	남대문로 4가 147-1	
변경	"	"	"	160	"	태평로 2가 122-1	남대문로 4가 부근
기정	"	3	6	50	녹번동 146-7	녹번동 146-12	도선역장
변경	"	"	"	90	" 144-65	" 146-12	노선역장 위치변경
기정	"	4	4	20	공덕동 7-118	공덕동 7-12	
변경	"	"	"	"	"	"	위치변경
기정	"	3	6	80	길우동 489-50	길우동 24-2	
변경	"	4	4	"	"	"	특원축소
기정	"	4	4	37	용두동 236-40	용두동 236-43	
변경	"	"	"	"	"	"	지적계 건축
* 별첨 도면표시와같은(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7 호							
도시계획사업(광화문재개발구역) 시행자지정일부변경 및 질서계획인가				18)로 시행자 지정 승인한 광화문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6호 ('75.11.)				도시계획법 제 24, 25, 26 및 건설부			

56-40 : 제605호 시 보 1977.4.27

고시 제41호(76.3.16)에 의거 시행자 지정일부 변경하는 동시조건 을 부하여 실시계획인가 하였기 이 를 고시한다.	5. 시행기간: 76.3 (인가일) - 78.12.31
1977.4.27	6. 사용 또는 수용할 보지 또는 건 물의 조서,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 의의 권리명세
서울특별시장	7. 보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보 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1. 사업명: 도시계획(광화문 구역) 재개발사업	8. 조건
2. 시행지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종로 149 및 세종로 1가 138-1 일대 (지번생략)	가) 시행자 이외의 노지 및 건축 물 기타의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처분 조건으로 인가 나. 보지등의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시는 건축시설의 분양 을 보상조건으로 수용
3. 시행면적: 8,983 평 방미터 (2,719.1평)	다.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광화문 재개발사업 가격평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액을 기준
4. 시행자: 중구 회현동 3가 11-3 당초: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준 종로구 종로 1가 138-1 코리아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성찬영	9.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과 및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에서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관계도서생략)
변경: 중구 회현동 3가 11-3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준	

শি 605

1977.4.27

56-1

별표 1. 수용 또는 사용할보지 전용외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의의 권리의 명세  
가. 표지

토 지 대 장					등 기 부 등 본					기타 권리	기타 권리내역
보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자 성명 및 주소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자 성명 및 주소			
세 종로	149	대	828.3 822.4	대한교육보험 중구 회현동3가 11-3	149	대	828.3 (822.4)	대한교육보험 중구 회현동3가 11외3			
	147-1	"	8	"	147-1	"	8	"			
	147	"	115	"	147	"	115	"			
	137	"	16	"	137	"	16	"			
	136	"	38	"	136	"	38	"			
	133-1	"	100	"	133-1	"	100	"			
	132	"	161	"	132	"	161	"			
	134-1	"	34	"	134-1	"	34	"			
	135	"	36	"	135	"	36	"			
	125	"	112	"	125	"	112	"			
	123-2	"	20	"	123-2	"	20	"			
	123-1	"	72	"	123-1	"	72	"			
	122	"	18	"	122	"	18	"			
	121-1	"	25	"	121-1	"	25	"			
	121-2	"	34	"	121-2	"	34	"			
	120	"	37	"	120	"	37	"			
	119	"	15.6	"	119	"	15.6	"			
	119	"	53 (23)	"	119	"	53 (23)	"			
	116	"	0.4 (34)	"	116	"	0.4 (34)	"			
	117	"	72.9(75)	"	117	"	72.9(75)	"			
	128	"	35.1(45)	"	128	"	35.1(45)	"			
	127	"	31	"	127	"	31	"			
	124	"	20 (43)	김수영 인천시 금곡동 29	124	"	20	"			
	129	"	30	최성우 송로구 당주당 95-12호	129	"	9.4(43)	김수영 인천시 금곡동 29	근저당 금	국민은행 상업은행 표성수	23,000,000 15,000,000
	121	"	13	"	121	"	13	"	근저당 가등기	"	
	126	"	66	김덕선 송로구 세종로	126	"	66	김덕선 송로구 세종로 126	근저당	국민은행	13,000,000
	138-1	"	102.1	성찬영 송로구 세종로 138-1	138-1	"	102.1	성찬영 송로구 세종	"	제일은행	232,000,000

보 지 대 상						등 기 부 등 본						기타 권리 내역	
보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권리		
세종로	138-3	대	50.6	성찬영	종로구 세종로 138-1	138-3	대	50.6	성찬영	종로구 세종로 138-1			
종로1가	12-1	"	33	"	"	12-1	"	33	"	"	근저당	제일은행	202,000,000
"	12-2	"	30	"	"	12-2	"	30	"	"			
"	12-3	"	34	"	"	12-3	"	34	"	"			
세종로	138-2	"	25.3	장재근	마포구 농교동 201-16	138-2	"	25.3	장재근	종로구 관철동 18-8	근저당	신탁은행	8,000,000
종로1가	16	"	53	"	"	16	"	53	"	"			
"	9	"	24	안평순	종로구 종로1가 9	9	"	24	안평순	종로구 종로1가 9			
"	10-1	"	34	박윤규	종로1가 10번지	10-1	"	34	박윤규	종로1가 10			
"	10-2	"	20	김형자	서대문구 북아현동 1-245	10-2	"	20	김형자	서대문구 북아현동 1-245			
"	"	"	10	박윤규	종로1가 10	11	"	10	박윤규	종로1가 10			
"	15	"	3.6	김순열	종로구 종로1가 15	15	"	3.6	김순열	종로구 종로1가 15	근저당	조홍은행 임농우	8,000,000
"	1-1	"	6.1	차태식	성북구 종암동 10-140	1-1	"	6.1	차태식	성북구 종암동 10-140			
"	6-1	"	4.4	이영호	종로구 종로1가 6	6-1	"	4.4	이영호	종로구 종로1가 6			
"	7-1	"	1.9	이말녀	" 종로1가 7-1	7-1	"	7.1	이말녀	" 종로1가 7-1			
"	8-2	"	2.1	장옥삼	" 종로1가 8-2	8-2	"	2.1	장옥삼	" 종로1가 8-2			
"	"	"	1.7	국유	"	8	"	1.7	국유	"			
"	13	"	1.2	박근배	종로구 청진동 267	13	"	1.2	박근배	종로구 청진동 267			
"	9-2	"	43.3	서울시	"	9-2	도로	43.3	서울시	"			
"	14-3	"	"	"	"	14-3	"	"	"	"			
세종로	108-1	"	89.3	"	"	108-1	"	89.3	"	"			
"	129-1	"	37.3	"	"	129-1	"	37.3	"	"			
"	131-1	"	4.7	"	"	131-1	"	4.7	"	"			
종로1가	2	"	26	박용래	종로구 종로1가 3	2	대	26	박용래	종로구 종로1가 3			
"	3	"	108	"	"	3	"	108	"	"			
"	3-1	"	2.6	"	"	3-1	"	2.6	"	"			
합계			2,719.1					2,719.1					

## 나. 건 물

가 육 대 장								등 기 부 등 본							
건물소재	지번	구 조	용도	면적	소유자성명 및 구조	지번	구 조	용도	면적	소유자성명 및 구조	기타 종류	기타 관리 내 역	현 황		
세종로	126	목조와 즙	주택	25	강역선 종로구 세종로 126	126	목조와 즙	주택	25	김역선 종로구 세종로 126	근저당	국민은행 13,500,000	공부와 동일		
	129	철근 콘크리트조	주택 및 점포		김수영 인천시 금곡동 29	129	철근 콘크리트조	점포 및 주택		김수영 인천시 금곡동 29	"	" 23,000,000	"		
	1 층			38.44			1 층		38.44				"		
	2 "			40.62			2 "		40.62				"		
	3 "			40.62			3 "		40.62				"		
	4 "			29.19			4 "		29.19				"		
	5 "			29.19			5 "		29.19				"		
	6 "			29.19			6 "		29.19				"		
	지 하			38.44			지 하		38.44				"		
	옥 탑			3.53			옥 탑		3.53				"		
	소 계			249.22			소 계		249.22				"		
세종로	130	세멘트 벽돌조 영업소			최성우 세종로 130	130	세멘트 벽돌조	영업소		최성우 세종로 130	근저당 가등기	상업은행 16,000,000	철근 콘크리트조		
	131	세멘트 부록조				131	세멘트 부록조								
동일지상	1 층			30.99		동일지상	1 층		30.99				37.71 점		
	2 "			30.99			2 "		30.09				36.71 "		
	3 "			31			3 "		31				36.71 "		
	지 하			5			지 하		5				공부와 동일		
	소 계			97.98			소 계		97.98						
	138-1 12-1	철근 콘크리트조 (12 층)	영업소		설찬영 종로구 세종로 138					근저당	제일은행 202,000,000		공부와 동일, 가옥 대장 에는 미등재		
	동일지상						1 층		115				"		
							2 "		115				"		
							3 "		120				"		

가 육 대 장						동 기 부						등 본		
건물소재	지번	구 조	용도	면적	소유자성명및주소	지번	구 조	용도	면적	소유자성명및주소	기타 권리	기타 권리내역	본 허	
						4	층		120	성찬영	종로구세종로 138-1			공부와 동일, 가옥대장에는 미등재
						5	"		120					
						6	"		120					
						7	"		120					
						8	"		120					
						9	"		120					
						10	"		120					
						11	"		120					
						12	"		120					
						우	답		20					
						지	하 1	층	85					
						지	하 2	층	95					
						소	계		1,630					
종로 1 가	12-2	목조와습	주택	16	성찬영	새종로 138-1	12-1	목조와습	주택	16	성찬영			
		연와조												
	12-3	목조와습	"	22	"	"	12-3	목조와습	"	22	"			
서 종로	138-3	"	"	21.95	"	"	138-3	"	영업소	21.95	"			
	138-2	목조스레트	영업소	24.98	장재근	종로구관찰동 18-8	138-2	목조스레트	"	4.92 24.98	장재근	종로구관찰동 18-8	근처방	한국인탁은행 8,000,000
속로 1 가	16	목조와습	"	32.05	"	"	16	목조와습	"	32.05	"			
	"	"	"	5.38	"	"				5.38	"			
	9	"	주택	14.43	안평순	종로구종로 1 가 9	9	"	주택	14.43	안평순	종로구종로 1 가 9		
	10-1	"	"	29.2	박윤규	종로구종로 1 가 10				29.2	박윤규	종로구종로 1 가 10		
동일지상														11번지상에 미등기 건물 23,29평 있음

가 육 대 장					동 기 부					동 본		
건물소재지번	구 조	용도	면적	소유자성명및주소	지번	구 조	용도	면적	소유자성명및주소	기타 권리	기타 권리내역	현황
종로1가	2 철근 콩크리트 3 세멘트연와조	영업소	*	박용래 종로구 종로1가3	2	철근 콩크리트 세멘트연와조 ( 5개층 )	영원	*	박용래 종로구 종로1가3			지상 9층, 지하 1층 전돌
	3-1	1 층	125.8	박용래		1 층	125.8					공부와 동일
동일지상	중간 2 층		26.5			중간 2 층		56.5				125.8 평
	3 층		125.8	박용래		3 층	125.8					공부와 동일
	4 "		125.8			4 "	125.8					"
	5 "		125.8			5 "	22.55					125.8 평
	6 "		125.8			지하 1 층	115.34					6층-9층까지 125.8 평
	지하 1 층		115.34			소 계	571.79					연전적계 1,247.54 평
	소 계		770.84									

## 별표2.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가. 토 지

토 지 대 장				등 기 부				등 본		
도 지 번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성 명 및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성 명 및 주 소	기 타 권 리	기 타 권 리 내 역
종 로	129	대	9.5 (43)	김수영 인천시금곡동29번지	129	대	9.6 (43)	김수영 인천시금곡동 29 번지	근 저 당	국민은행 23,000,000
	130	"	30	최성우 종로구당주동 95-12 호	130	"	30	최성우 종로구세종로 130번지	근 저 당 가 등 기	상업은행(표성순) 16,000,000
	131	"	13	"	131	"	13	"	"	"
	126	"	66	김덕선 종로구세종로	126	"	66	김덕선 종로구세종로 126번지	근 저 당	국민은행 13,000,000
	138-1	"	102.1	성찬영 종로구세종로 138-1	138-1	"	102.1	성찬영 종로구세종로	"	제일은행 202,000,000
	138-3	"	50.6	"	138-3	"	50.6	" 종로구세종로 138-1번지	"	"
종 로 1 가	12-1	"	33	"	12-1	"	33	"	근 저 당	제일은행 202,000,000
	12-2	"	30	"	12-2	"	30	"	"	"
	12-3	"	34	"	12-3	"	34	"	"	"
종 로	138-2	"	25.3	장재근 마포구동교동 201-16	138-2	"	25.3	장재근 종로구관철동 18-8번지	근 저 당	신탁은행 8,000,000
종 로 1 가	16	"	53	"	16	"	53	"	"	"
	9	"	24	안평순 종로구종로 1 가 9	9	"	24	안평순 종로구종로 1 가 9번지	"	"
	10-1	"	34	박윤규 종로 1 가 10번지	10-1	"	34	박윤규 종로 1 가 10번지	"	"
	10-2	"	20	김형자 서대문구북아현동 1-245	10-2	"	20	김형자 서대문구북아현동 1-245	"	"
	"	"	10	박윤규 종로 1 가 10번지	"	"	10	박윤규 종로 1 가 10번지	"	"
	15	"	3.6	김순열 종로구종로 1 가 15	15	"	3.6	김순열 종로구종로 1 가 15번지	근 저 가 등 기	조흥은행(임동우) 8,000,000
	1-1	"	6.1	차태식 성북구종암동 10-140	1-1	"	6.1	차태식 성북구종암동 10-140번지	"	"
	6-1	"	4.4	이영호 종로구종로 1 가 6	6-1	"	4.4	이영호 종로구종로 1 가 6번지	"	"

토 지 대 장				등 기 부				등 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권리	기타 권리 내역
세 종 토	7-1	대	1.9	이 말녀	종로구 종로 1가 7-1	7-1	대	1.9	이 말녀	종로구 종로 1가 7-1 번지		
	8-2	"	2.1	장옥삼	종로구 종로 1가 8-2	8-2	"	2.1	장옥삼	종로구 종로 1가 8-2 번지		
	8	"	1.7	국 유		8	"	1.7	국 유			
	13	"	1.2	박근배	종로구 청진동 267	13	"	1.2	박근배	종로구 청진동 267 번지		
	9-2	도로	43.3	서울시		9-2	도로	43.3	서울시			
	14-3	"				14-3	"					
	108-1	"	89.3	"		108-1	"	89.3	"			
	129-1	"	37.3	"		129-1	"	37.3	"			
	131-1	"	4.7	"		131-1	"	4.7	"			
	2	"	26	박용태	종로구 종로 1가 3	2	"	26	박용태	종로구 종로 1가 3		
합 계	3	"	108	"	"	3	"	108	"	"		
	3-1	"	2.6	"	"	3-1	"	2.6	"	"		
			866.8					866.8				

제 605 호 시 보 1977.4.27 56-13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지적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신설·변경 및 기적승인(지적변경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

시 제 41 호(77.3.16)의 관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분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4.28

서울특별시장

○ 도로변경 및 지적승인(지적변경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번호	폭원	연장	기정	종정	비고
기정	중로	1	125	20	1,800	상암동 강변	난지도
변경	"	"	"	"	1,950	상암동 2-109 (2-109)	노선연장(150m)
신설	"	138	"	7,500	망우동	광로 24호	난지세양부분 370m 지적승인
기정	대로	"	40	36	3,820	차선동(광장3호)	세브란스병원 (광로 40)
변경	"	"	"	"	"	"	대신동 툴케어트부근 360m 구간 폭원축소
기정	"	2	50	30	3,120	왕십리광장	왕십리동
변경	"	"	"	"	"	"	행당동, 응봉동 2개부 근 400m 구간 폭원확장
기정	중로	2	21	15	1,150	이티원	보광동
변경	"	"	"	"	"	"	보광 80-9가 각설치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56-50 제 605호

시

보 1977.4.27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변경  
폐지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을 다음과 같이 신설, 일부변경  
폐지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41호('77.3.16)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4.28

서울특별시장

## ○ 결정(신설, 일부변경, 폐지)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1	10 <sup>m</sup>	50 <sup>m</sup>	당산동 2가	36 - 1	당산동 2가 36 - 1	
변경	"	"	"	"	"		노선 폐지
기정	2	8	120	당산동 2가	36 - 1	당산동 2가 47 - 3	
변경	"	"	"	"	"		노선 폐지
기적	"	"	"	100	문래동 3가 84 - 2	문래동 3가 84 - 1	
변경	"	"	"	"	"		노선 폐지
기정	4	4	60	양평동 5가	67	양평동 5가 69 - 2	
변경	3	6	25	"	"		위치변경
기정	"	"	"	130	시흥동 218 - 25	시흥동 220 - 29	
변경	"	"	"	"	"		위치변경
신설	"	"	"	90	봉천동 504 - 2	봉천동 501 - 6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폐지)  
및 지적변경 승인

1. 서울특별시 관내 다음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의 관한 위임 사항에 따라 시설변경(폐지) 및

지적변경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4. 28

서울특별시장

## ○ 시설변경(폐지) 및 지적변경 승인조서

구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	연장	기정	총 철	비고
기정	중로	2		■ 15	■ 150	문래동3가 80	글레동3가 78	
변경	"	"		-	-	--	-	폐지(구획정리기구내도로)
기정	대로	3	58	25	7,200	경동동(대3-56)	세검정(대1-12)	
변경	"	"	"	"	"	"	"	세검정부근 100m 구간지적변경
기정	중로	2	55	15	2,000	보문동6가(중3-9)	혜화동로타리	
변경	"	"	"	"	"	"	"	창신아파트부근 50m 구간 명신국교부근 230m 구간지적변경
기정	"	"	27	15	850	구서울성대(대1-6)	중앙동(준3-12)	
변경	"	"	"	"	"	"	"	시정부근 80m 구간 지적변경
기정	"	3	9	12	1,650	창신동	신설동	
변경	"	"	"	"	"	"	"	청룡사부근 100m 구간지적변경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56-52 제 605 호

시 보

1977.4.27

##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1 호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일부변경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아동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13조 및 건설부고시제41호('77.3.16)의 관한 위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1977. 4. 28

서울특별시장

## 가. 공원결정 및 일부변경 조서

구분	공원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청량아동공원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1	612	
"	옥수아동공원	성동구 옥수동 78 의 6월	3,212	
"	마장아동공원	성동구 마장동	952	
폐지	영등포 제1아동공원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7,447	

## ⑥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2 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  
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와 건설부고시제41호

('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4. 29

서울특별시장

## 가. 시설결정(운동장)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운동장	강남구 도곡동 166-2 부근	7,394 ㎡ (2,237평)	

※별첨 도면 생략

## 공 고

## ④ 서울특별시공고제 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설시  
계획 공람 공고

1. 건설부고시제 25호(77.2.4)로  
고시된 남산관광도로 진입로개량공  
사 구간내에 저속 편입되는 토지  
의 도시계획사업설시계획을 수립하  
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  
자 이에 공고함.

2.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브이게 한다.

1977. 4. 25

서 울 특 별 시 장

## 공 람 개 요

1. 사업장위치 : 용산구 한남동 산 10  
의 194 ~ 한남동 산 10의 141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남산관광도로 진입로 개량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차도육교  $B = 7.3\text{m}$   $L = 295\text{m}$   
도로확장  $B = 4.2\text{m}$   $L = 580\text{m}$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1977.2.1 ~ 77.6.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다음

56-54 채 605 호

시  
보

1977.4.27.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 전 표 시			분할 후 표 시 (수용대상)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형)	주 소	성명
1	한남동	726-42	대	50	726-42	대	50	726-42	김규원
2	"	726-41	"	50	726-41	"	39	"	"
3	"	726-40	"	198	726-367	"	1,0	726-40	정문설
4	"	726-3	"	200	726-3	"	65	이촌동 300-24	김충기 제단법인 약초판음회
5	"	산10-24	임	8	산10-24	임	8		
6	"	산10-98	"	5.07	10-188	"	15	금산군 미원면 순원리 153	김철통
7	"	산10-130	"	3.08	10-130	"	94	해화동 22-37	김옥열
8	"	산10-129	"	43	10-129	"	43	순원리 153	김철통
9	"	산10-99	"	3.52	10-189	"	15	해화동 22-37	김옥열
10	"	산10-100	"	13.08	10-197	"	70		원불교
11	"	산10-107	"	2.20	10-191	"	6	후암동 55-15	김해영
12	"	산10-104	"	1.24	10-190	"	23	판훈동 197-34	홍순덕
13	"	산10-132	"	44	10-132	"	44	"	"
14	"	산10-105	"	5	10-105	"	5	산 10	이경자
15	"	산10-133	"	48	10-133	"	48	"	"
16	"	726-62	대	46	726-372	대	25	"	"
17	"	726-92	"	9	726-92	"	9	"	"
18	"	726-93	"	282	726-374	"	216	충무로 4가 125-1	코리아나 관광 Co
19	"	산10-87	임	12.01	산10-187	임	117	소공동 51	차준구
20	"	산10-134	"	95	10-134	"	15	"	"
21	"	산10-56	"	3.24	10-185	"	14	"	"
22	"	산10-57	"	65.03	10-186	"	48	"	"

순 위	소재지	분 할 전 표 시			분 ( 후 용 대 표 장 )			시		소 유 자	설 명
		지 번	자 목	지 적	지 번	자 목	지 적	주 소	소 유 자		
23	한남동	772-3	대	1,204	772-17	대	213	학동 산 21	대한주택 공사		
24	"	726-74	"	2,180	726-373	"	5		남산면촌		
25	"	726-292	"	22	726-292	"	22	반포 274	홍승호		
26	"	726-291	도	31	726-291	도	31		"		
27	"	726-290	대	12	726-290	대	12		"		
28	"	726-289	도	18	726-289	도	18		"		
29	"	726-174	대	217	726-174	대	0.5		"		
30	"	726-20	"	300	726-20	"	80	천연동 80-36	김영선		
31	"	726-4	"	85	726-4	"	48	이태원 101	양세내		
32	"	726-138	"	1,292	726-138	"	57	녹번동 86-30	한시대		
33	"	726-5	"	353	726-5	"	170		"		
34	"	726-288	"	36	726-369	"	32		"		
35	"	726-236	도	93	726-236	도	93		"		
36	"	산 10-137	임	22.25	산 10-194	임	196		"		
37	"	" 10-128	"	14.10	" 10-128	"	178		"		
38	"	" 10-25	"	4	" 10-25	"	4		"		
39	"	" 10-131	"	7	" 10-131	"	7		"		
40	"	726-22	대	47	726-22		23		"		

## ⑤ 서울특별시 공고 제 93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  
업체대체지정 및 지정취소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요령 제 5 조 및 동 6 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품 생산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대체지정 및 지정취소  
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77. 4.  
서울특별시

56-56 제 605호

시 보

1977.4.27

## 1. 대체지정업체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업 체 명	비이콘 공업 주식회사	비이콘 시계공업 주식회사	
대 표 자	이효진	곽동	
소 재 지	동대문구 중화동 110-10	"	
생 산 제 품	시계	"	
지 정 번 호	306	"	

## 2. 지정취소업체조서

지정번호	업 체 명	대 표자	소 재 지	생 산 제 품	취소사유
1204	미진산업사	박진환	강남구 풍납동 87	직조상표	이전

사 령

성동구  
서기관  
김동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1977년 4월 22일  
대통령

◎ 1977.4.21

중구  
지방행정주사  
김상경

◎ 1977.4.25

도봉구  
지방행정사무관  
김용석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2호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도시가스사업소  
지방서기관  
신무균동부병원  
지방행정서기보  
윤기정

◎ 1977.4.22

서기관에 임함.  
도시가스사업소 도시가스과장에  
보함.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2  
호 규정에 의거 징계에 처함.

서울특별시